소식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15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추출법으로 제조된 현행 스테비올배당체의 경우 약간의 쓴맛과 떫은맛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바이오기술(Bio-conversion)을 이용하여 스테비올배당체를 제조할 수 있도록 성분규격을 개선하고, 식품 제조시 보존료, 표백제 등 용도로 사용되는 무수아황산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성분규격을 신설하며, 무수아황산 제조원료인 유황의 규격을 설정함으로써 무수아황산 사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하는 한편, 잔탄검, 젤란검 제조 방법의 국제조화를 위해 제조 용매에 주정을 추가하고, 인베르타아제, 페룰린산의 성분규격 시험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스테비올배당체의 성분규격 개정

1) 추출법으로 제조된 현행 스테비올배당체의 경우 약간의 쓴맛과 떫은맛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제조방법 허용 필요
2) 바이오기술(Bio-conversion)을 이용하여 스테비올배당체를 제조할 수 있도록 성분규격 개정(II. 4. 가. 스테비올배당체)
3)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

나.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 및 제조원료인 유황의 규격 신설

1) 무수아황산 사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수아황산 및 제조원료(유황)에 대한 규격 신설(II. 4. 가. 무수아황산, Ⅴ.2. 질산제일수은시액, [별표 3])
2)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함량 규격 및 불순물 제한 규격 등 설정
3)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잔탄검 및 젤란검 제조에 필요한 용매 추가 허용

1) 현행 잔탄검 및 젤란검 제조 시 제조 용매로 이소프로필알콜만 허용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주정(에탄올)도 허용하고 있어 규정 개선 필요
2) 잔탄검 및 젤란검 제조 시 주정도 제조 용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분규격 개정(II. 4. 가. 잔탄검, 젤란검)
3) 식품첨가물의 국제조화 및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라.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1) 식품첨가물의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험법 개선 필요
2) 인베르타아제 및 페룰린산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II. 4. 가. 인베르타아제, 페룰린산)
3) 시험법 등 명확화에 따른 민원 편의성 향상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4-307호, 2024. 6. 26.(24. 6. 26.~24. 8. 26.)

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4 .6 .5.) : 심사대상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4. 9. 4.~24. 9. 10.) : 원안의결

다) 자체 규제심사(24. 9. 30.~24. 10. 4.) : 원안의결

라) 법제처 규제 사전검토(24. 11. 12.) : 의견없음

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25. 2. 26~25. 3. 2.) : 비중요규제

2) 행정예고 : 공고 제2024-531호, 2024.11.21.(24. 11. 21.~25. 1. 20.)

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4. 10. 29.) : 비대상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5. 2. 12.) : 원안의결

소식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26호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부정 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지급방법 및 절차의 개선,「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의 개선

– 포상금 지급기관을 고발 또는 행정기관만 지급 가능하도록 명확화

– 포상금 지급이 특정 개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1인당 연간 지급한도 조정

– 포상금 지급결정 시기 및 신고자에게 지급신청 통보 의무 규정 신설

– 포상금 지급 신청 통보를 받은 자는 통장사본 등 첨부서류와 함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

나.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일부 상향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저장,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7만원→10만원)

다. 기타 조문 정비

– 행정규칙 정비사업 개선의견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의 보고 규정 정비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변경

소식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2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영양표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2004호, 2024. 12. 3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식품유형별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간편조리세트와 같이 조리되지 않고 손질된 자연산물과 가공식품이 함께 들어있는 식품에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도안을 신설하는 한편, 외국어로 표시된 수출 식품에 대해 한글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여 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는 등 표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식품의 기준 및 규격」및「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외국어로 인쇄된 수출용 식품에 대해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부착 허용[안 Ⅱ. 1. 너. 10)]

1) 식품의 표시는 잉크 ·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기 · 포장의 재질 상 잉크 · 각인 또는 소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스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수출 식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수출 식품은 수출 계약이 변경되거나 파기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외국어로만 인쇄된 용기 · 포장에 스티커 등으로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국내「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식품임에도 제품을 폐기하는 등의 영업자 피해 발생

3)「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수출 제품에 대해 기부용, 행사용,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한글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여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국내 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나.「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 (안 Ⅲ. 1. 가. 2), 나. 2), 라. 2), 사. 2), 자. 2), 타. 2), 파. 1) · 2), 하. 2), 거. 2), 너. 2), 더. 2), 러. 2), 머. 2), 버. 2), 서. 2), 어. 2), 저. 2) 및 처. 2))

1) 영양표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2004호, 2024. 12. 3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식품유형별로 반영하여 조문 정비

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 반영 및 규정 정비(안 Ⅱ. 1. 사., Ⅲ. 1. 라. 2) 거), 사. 2) 거), 너. 2) 거), 버. 1), 버. 2) 거), 처. 2) 하),

[표 4], [표 5])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미김의 유형 명칭 및 식품첨가물 명칭 정비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식품의 경우 위탁생산제품(OEM)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제21조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은 표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 · 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 ·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 판매하는 영업으로 수입식품과 관련이 없으므로 영업자 혼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규정 정비

3) 곡류가공품 등 일부 식품유형에 대해 다른 식품유형으로 오인 ·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별 기준 및 규격상의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의 명칭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등과 오인 · 혼동할 수 있는 표시 · 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어 규제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이를 정리하기 위한 규정 정비

4) 전분류 중 '전분가공품'의 경우 제품명에 '전분' 의무 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조항으로 '전분가공품'에는 식품 유형의 명칭인 '전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규정 간 충돌로 인한 영업자의 혼선이 발생하므로 규정 정비로 영업자 혼선 방지

라. 자연산물과 가공식품이 함께 구성된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마련(안 『별지 1』1. 아. 2) · 4), [도 3] 1. 사.)

1) 가정간편식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제품에 대한 영양표시 필요성 지속 제기

2) 조리되지 않고 손질된 자연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영양표시 도안을 마련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선택권 보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4-604호, 24. 12. 30. ~ 25. 2. 28.)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비대상, 24. 11. 29.)